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2627 발의연월일: 2021. 9. 17.

발 의 자 : 신현영ㆍ김진표ㆍ서삼석

양정숙・윤건영・이수진(비)

이용우 · 천준호 · 한병도

허 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탁가정이나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 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면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키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연장은 대학에 진학하거나 특정 기관에서 직업 관련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고, 취업이나 취업 준비 등을 이유로 보호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1년으로 제한하고 있어 이들이 보호종료 이후에 안정적인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취업이나 취업준비 등을 이유로 보호대상아동이 신청하는 경우 6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하며, 자립지원전담기관에 자립지원전담요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보호대상아동

의 자립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제3호 및 제39조의2 신설 등).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취업이나 취업 준비 등의 사유로 보호대상아동이 6년 이내의 범 위에서 보호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를 "위탁보호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한 보호대상아동(이하 "자립준비아동"이라 한다)의"로 한다.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9조의2(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준비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에는 자립준비아동의 자립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립지원전담요원을 둘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 기준과 운영, 제2항에 따른 자립지원전담요원의 자격, 배치기준 및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제6호 중 "보호대상아동"을 "자립준비아동"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
| 등) ① ~ ③ (생 략) |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 | 4 |
| 에 따라 보호조치 중인 아동이 |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 |
| 당하면 시·도지사, 시장·군수· | |
| 구청장은 해당 아동의 보호기 | |
| 간을 연장할 수 있다. | |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u><신 설></u> | 3. 취업이나 취업 준비 등의 사 |
| | 유로 보호대상아동이 6년 이 |
| | 내의 범위에서 보호기간 연 |
| | <u>장을 요청하는 경우</u> |
| <u>3.</u> (생 략) | <u>4.</u> (현행 제3호와 같음) |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 제38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 | 제38조(자립지원) ① |
| 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 | <u>위탁보호가 종료되</u> |
| 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 | 거나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한 보 |
| 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 | 호대상아동(이하 "자립준비아 |
| 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 | <u>동"이라 한다)의</u> |
| 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 |
| |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제59조(비용 보조) 국가 또는 지 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1. ~ 5. (생략)
- 6. 제38조에 따른 <u>보호대상아동</u> 6. -----<u>자립준비아동</u> 의 자립지원에 필요한 비용 7. · 8. (생략)

| 제3 | 9조의2(자립지원전담기관의 |
|----------|-----------------------------|
| 소 | 널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 |
| Ę | <u> </u> 산체는 자립준비아동의 자립을 |
| ス |] 원하기 위하여 자립지원전담 |
| |]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 |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전담 |
| | 관에는 자립준비아동의 자립 |
| |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 |
| |] 위하여 자립지원전담요원을 |
| | <u> </u> |
| | |
| | ③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전담 |
| 7 |]관의 설치 기준과 운영, 제2 |
| ਰੁੱ | <u>}에 따른 자립지원전담요원의</u> |
| ス | ト격, 배치기준 및 교육·훈련 |
| <u> </u> |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
| <u>_</u> | 으로 정한다. |
| 제5 | 9조(비용 보조) |
| _ | |
| _ | |
| _ | |
| _ | |
| _ | - . |
| 1 | · . ~ 5. (현행과 같음) |
| _ | |

7. · 8. (현행과 같음)